



##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맹견 출입금지구역(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안내 협조 요청

---

1. 관련 : 「동물보호법」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2. '19.3.21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은 영유아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에 출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도사견, 아메리칸 핏볼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3. 이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 홍보물(포스터, 전단지)을 송부 하오니 귀 기관에서는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반려동물에티켓\_포스터.  
2. 반려동물에티켓\_전단지  
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4.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 교육부장관(학교안전총괄과장), 교육부장관(유아교육정책과장), 교육부장관(특수교육정책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유아교육과장), 서울특별시교육감(초등교육과장), 부산광역시교육감(유초등교육과장), 대구광역시교육감(초등교육과장), 대구광역시교육감(유아특수교육과장), 인천광역시교육감(초등교육과장), 인천광역시교육감(안전총괄과장), 광주광역시교육감(초등교육과장), 광주광역시교육감(유아특수교육과장), 대전광역시교육감(유초등교육과장), 울산광역시교육감(교육시설과장), 경기도교육감(총무과장), 강원도교육감(총무과장), 충청북도교육감(총무과장), 충청남도교육감(총무과), 전라북도교육감(총무과장), 전라남도교육감(총무과장), 경상북도교육감(총무과장), 경상남도교육감(유아특수교육과장), 경상남도교육감(초등교육과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총무과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교육협력과장)

사무관 동물복지정책팀장 전결 2019.3.21.  
김철기 팀장 김동현

협조자

시행 동물복지정책팀-1118 접수 보육정책과-2287 (2019.03.22.)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번호 044-201-2374 팩스번호 044-000-0000 / [ckkim2611@korea.kr](mailto:ckkim2611@korea.kr) / 대한민국 공개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